

<說苑>

動物檢疫에 關한 小考

金炳星

1. 序 言

動物檢疫은 動物이나 畜產物의 輸入으로 因하여 外國으로부터 傳染病의 侵入을 未然에 防止하고 輸出에 있어서는 傳染病에 罷患되지 아니한 健康한 動物이나 畜產物만을 輸出하고 또한 輸入國側의 檢疫要求條件을 充足시켜 海外 市場에서의 國家信用度를 確保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見地에서 國際間의 動物 및 畜產物의 輸入에 있어서 상상 以外로 複雜하게 다루어지는 問題의 하나가 動物檢疫이라 말 할 수 있다.

動物이나 畜產物을 輸入할 때에는 輸出國家側의 家畜傳染病 發生狀況 및 그나라의 防疫 實施狀況이나 檢疫 實施狀況 等을 充分히 檢討하고 自己 나라의 實情과 比較하여 安全한 檢疫條件下에 輸入을 實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輸出에 있어서도 自己 스스로가 輸出動物 및 畜產物의 衛生検査와 檢疫을 徹底히 實施하여 國際信用度를 높이는 한便 購入國側의 提示한 檢疫要求條件을 誠實히 履行하여 檢疫으로 因한 畜產物 輸出振興上의 차질을 未然에 防止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勿論 世界各國은 위에 말씀드린 여러 問題點을 解決하기 為하여 動物檢疫所를 設置하거나 檢疫法을 制定하여 一定한 期間의 隔離檢疫, 複雜한 輸送條件의 提起,豫防注射나 各種 血液學的, 細菌學的 檢査 實施의 要求 및 그結果에 關하여 輸出國 政府가 保證하는 内容의 衛生 또는 檢疫證明書의 要求, 原產地證明書의 添附, 特定地域內의 特種動物 또는 畜產物의 輸入禁止, 燒却, 消毒, 反送, 隔離, 輸出國의 防疫 實施 現況 및 檢疫施設 또는 制度를 調査하기 為한 海外派遣, 販賣國側의 傳染病 發生에 關한 情報提供의 義務化 等各種 方面으로 注意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現行 動物檢疫은 人體檢疫의 境遇와 달라 같은 檢疫物이 輸出入 兩國에 依하여 二重的으로 實施되고 있기 때문에 輸出入되는 檢疫物의 荷主에게 큰 不便을 招來하고 있음으로 그重複性을 避하기 為하여 國際共通의 檢疫方法이나 檢疫證 記載內容의 標準化等을 制定하기

爲하여 本部는 佛國 巴里에 둔 國際獸疫 事務局에서는 每年 會議가 있을 때마다 重要 討議 案件으로 論議되고 있다.

그러나 O.I.E — F.A.O — W.H.O의 專門機構가 公認하고 있는 家畜傳染病의 種類만 하더라도 120餘種이며 其中 約 80餘種이 人獸共通傳染病으로 認定되고 있을 만큼 傳染病의 種類가 廣範圍하며 또한 傳染病의 發生狀況과 그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地域別, 國家別, 傳染病類別로 各己 크게 差異가 나는 同時에 國家別로 衛生 또는 經濟水準이나 風習에 큰 差異가 있으므로 이의 一律化는 極히 힘든 것으로서 于今 것 이령다한 成果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家畜衛生에 關한 國民水準 및 生活 習慣이 各己 다른 異邦國間에 있어서 兩國 國民이 서로 滿足할 만한 檢疫을 實施한다는 것이 容易한 일이 아님 것은 能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나라도 畜產物 輸出振興을 計劃하고 있는 以上 앞으로 보다 廣範圍한 海外市場의 開拓에 隨伴하여 檢疫의 重要度도 加一層 그責任이 加重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나라의 現行檢疫 實施 現況 및 施設等을 概略적으로 考察하고 아울러 檢疫은 그性格上으로 보아 外國의 防疫이나 檢疫實情에 関은 知識이나 經驗이 要求되는 것인므로 參考로 輸出入의 相對方이 되는 海外重要各國의 資料를入手한中 代表의 人 나라의 檢疫現況 또는 家畜衛生狀態나 檢疫上의 問題等을 選擇하여 比較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檢疫 實施 現況

우리나라는 三面이 바다로 치여 家畜傳染病의 國外으로부터의 輸入을 防止하는데 地理的으로 어느 나라보다理想的인 立場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家畜이나 畜產物의 輸出入量도 그리큰 數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좋은 環境下에 徹底한 防疫을 繼續實施한다면 그結果 여러 가지 種類의 傳染病이 根絕될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 家畜이나 畜產物의 輸出入量이 增加된다 하더라도 國內防疫보다도 오히려 輸入港口에서 實施하는 檢疫面에 置重하여도 防疫 實施의 所

期의 目的을 達成할수 있다는 確信을 가질수있라고 生覺됩니다.

現在 그病이 그나라에 發生되던 안되던 世界共通의 으로 重要視되고 있는 主要傳染病中 代表의인것은 牛疫, 口蹄疫, 牛肺疫, 炭疽, 氣腫疽, 結核症, 부루세라症, 羊痘, 狂犬病, 鼻疽, 媚疫, 豚코레타, 뉴- кач슬病, 旋白痢病, 아푸리카馬病 等을 例舉할수 있으며 이中 特히 牛疫, 口蹄疫, 牛肺疫, 鼻疽等이 發生되고 있는 나라는 國內畜產振興面으로나 畜產物의 對外輸出面으로莫甚한 經濟的 損失을 받고 있으므로 하루 速히 이病의 發生을 終息시키고자 努力하고 있으며, 一面 위와같은 傳染病의 發生이 없는 나라는 國外으로부터의 侵入을 考慮하여 이를 미리 防止하고자 많은 犯牲을 무릅쓰고 家畜이나 畜產物의 輸入을 禁止하거나 또는 輸入港口나 輸出國에 獸醫檢疫官을 派遣하여 萬全을 期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傳染病 發生狀況을 볼때에 于先 牛疫, 口蹄疫, 牛肺疫, 鼻疽等의 發生이 없는點을 例舉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日本, 臺灣, 美國, 카나다, 뉴-저란드等 몇個國家를 除外한 歐羅巴, 亞細亞, 南美, 大洋洲 等의 大部分의 地域에서는 于今것 前記傳染病의 大部分 또는一部가 發生되고 있으며 特히 香港, 蒙古, 潘洲, 中共等의 隣接國이나 歐羅巴地域으로부터의 牛肺疫, 牛疫, 口蹄疫等의 國內侵入 防止에는 非常한 警戒를 하여야 될것으로 믿읍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나라 農林部當局은 農林告示 108號로서 歐羅巴, 日本, 臺灣을 除外한 其他 亞細亞地域 및 中南美 各國으로부터의 偶蹄類의 動物 및 그畜產物의 輸入을 禁止토록하고 潘洲國으로부터는 牛肺疫 防疫上 牛 및 그肉類를 輸入禁止토록 強力한 檢疫措置를 施行하고 있습니다.

한便 外國에서는 獸醫傳染病의 分野가 急性傳染病도 重要視되지만 慢性傳染病이나, 消耗性疾患인 寄生虫病 및 野生動物에 關한 傳染病 調査 및 對策樹立 等이나 動物虐待防止運動等에 置重되고 있는 感이 있는 예 比하여 우리나라 于今것 急性傳染病이나 몇 가지의 慢性傳染病에 關한 防疫上으로도 汲汲하고 있는듯한 感이 있습니다.

家畜防疫을 圓滑하게 遂行하기 爲하여는 于先 國內 防疫狀況도 重要하지만 外國의 傳染病 發生狀況이나 防疫實施 狀況도 迅速正確하게 알수있도록 制度化되여야하고 또한 外國이 우리나라의 實情을 正確하게 理解할수있도록 外國과 情報를 交換하여야 할것입니다.

마라서 우리나라 1953年 11月 18日에 佛蘭西 巴에 있는 國際獸疫事務局(Office International Epizooties)에 正會員國으로 加入하여 每年 美貨 約 749萬分擔金을 該機構에 納付하고 있습니다.

本機構의 規約에 따라 우리나라에 牛疫이나 口蹄疫이 發生되었을 境遇에는 그 發生 및 防疫措置 狀況을 機構에 電文으로 緊急通告하여야하며, 牛疫, 口蹄疫, 牛肺疫, 炭疽, 羊痘, 狂犬病, 鼻疽, 媚疫, 豚코레타의 發生 狀況을 常時 通報ト록 되어 있습니다.

國際獸疫事務局에서는 각國으로부터 보내온 이通를 審集整理하여 70餘 會員國 및 W.H.O, F.A.O 國際航空協會等 機關에 隨時로 配付하고 있습니다.

또한 外國의 檢疫實施 過程을 分類하여 불례에 人물이나 畜產物이 外國에 輸出되며는 于先 動物인 우에는 牧場內에서 道間이나 州間 移動法에 依하여 荷前에 結核症이나, 부루셀라症, 旋白痢病의 檢查他 豚코레타, 렉토스파리症 等의 豫防注射를 그地의 公獸醫師나 公設 家畜保健所에 依하여 華한後 證書를 添加하여 海空港 檢疫所 또는 駐頭에 一定時間을, 美國의 境遇에는 8時間을 法에 依하여 檢疫시키고 그동안에 檢疫官이 肉眼의 檢查斗 書面檢를 實施하여 船積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檢疫에는 輸出 檢疫物의 用途에 따라 種畜用이 即時 屠殺用이나에 依하여 檢疫方法에 差位가 있으或是 犬을 輸入하는 境遇에는 一般 家庭用 愛玩用인 警備用인가 或은 牧場用인가를 區分하고 牧犬으로 牧場에서 使役되는 犬인 境遇에는 狂犬病 以外에 羊에서 重要視되는 内外寄生虫에 對한 補充検査를 實하게 됩니다.

至 冷凍肉類를 州外나 國外로 輸出하는 境遇에는 物移動法에 依하여 飼育地에서 移動되기에 앞서 牧內에서의 必要한 獸醫學의 檢査를 單한後 居畜場에 居畜検査官으로 하여금 生體 및 解體検査를 實施한음 그 合格證明書를 添加하여 動物檢疫所에서 檢疫을 交付받아 輸出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外國에서는 檢疫이 다만 港口에서만 實되는것이 아니고 生產牧場에서부터 이미 防疫이나 生檢査가 實施되기 始作하여 輸出港口에서 動物檢疫은 輸出檢疫物을 輸出함에 있어 위와같은 諸般規定에 依한 檢査斗 其他 必要한 措置를 畢하였는가의 與 및 購入國側의 檢疫要求條件의 履行與否를 充分히 考慮한마음 最終의 檢査를 畢하여 檢疫證을 發付하되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輸出量의 增加에 따라 購入國側의 要

· 있을 때에는 위와 같은措置를 取하고 있으나 于今 것
를 위한 實質의 国内家畜 移動法이 法律로서 規定
여 있지 아니하여 傳染病 發生의 原因究明이나 檢疫實
上에 多少의 複雜性도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外國의 어떤 나라에서는 檢疫을 비단 輸出入動物 및
畜產物에만 限하여 實施하는것이 아니라 國內消費用
로 州間 또는 道間에 移動되는 動物이나 畜產物에 對
여도 檢疫을 實施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이와같은
度는 우리나라의 畜產振興, 防疫規標의 改善, 輸出
되는 畜產物의 增加에 따라 연전가는 深刻히 考慮되
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現在 우리나라의 國立動物 檢疫所가 釜山 松島에 位
하고 있으며 서울支所가 서울에 設置되어 있으며 動
物 및 畜產物을 輸入할 수 있는 港口는 釜山港, 仁川港
金浦空港으로 制限되어 있습니다.

이 動物 檢疫所는 西紀1909년 7月 12日에 舊韓國農
工部所管으로 輸出中의 檢疫用으로 創設되어 現在에
투고 있으며 日政時 對日韓牛 移出檢疫用으로 利用
었다가 解放後 한때는 輸出入 檢疫業務量이 적어
業이 小規模狀態에 있었으나 過去 4~5年前부터 生
豚, 豚毛, 牛骨의 輸出, 乳牛 導入等으로 急速히 業務
이 擴大되었으며 이는 將來에 있어서도 輸出振興 政
의 영향을 받아 繼續 業務量이 增加 또는 檢疫實施
領이 強化될 것으로 生覺됩니다.

釜山에 所在하고 있는 現檢疫所는 그位置로보아 工業
帶나 都心地帶에서 隔離된 家畜防疫上 極히 有利한
条件에 있으며 그敷地가 22,204坪이며 林野가 196,568
으로서 檢疫物의 收容能力은 牛 294頭 豚이 1,565頭
15頭를 同時收容 할 수 있는 分離乳畜舍로서 構成되
있습니다.

이외에 輸出用에 限하여 生豚檢疫用으로 釜山市 郊
에 6,300頭의 生豚을 계留 檢疫 할 수 있는 5個所로
分된 生豚檢疫 施行場所가 있습니다.

이는 農林部 獸醫當局에 依하여 許可된 것으로 모든
業 및 管理는 政府檢疫官 指揮下에 있습니다.

動物이나 畜產物을 輸出入하고자 할 때에는 所定樣式
依한 檢疫申請書를 國立動物 檢疫所長으로 申請
여 家畜傳染病豫防法에 規定되어 있는 所定期間을
계留 檢疫하거나 畜產物이 境遇에는 그에 適切한 消毒
- 實施하여 家畜傳染病에 罹患되지 아니하였거나 또
- 罹患된 疑心이 없는 것에 限하여 檢疫證明書를 荷
앞으로 發行하여 이證明書를 가지고 稅關에 가서 通
手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檢疫 계留場에 계留하기 힘든 動物이나 初生畜等은

他所에서 實施하고 있으며 輸入時에는 必히 輸出國의
政府가 發行한 原產地가 表示된 檢疫證明書를 携帶하
지 아니하면 輸入할 수 없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檢疫物의 荷役, 飼養 管理等은 檢疫官 監督下에 實
施되며 檢疫官은 獸醫師 資格所有者입니다.

冷凍 兔肉, 豚毛等 檢疫物은 檢疫所內 檢疫이 不可能
함으로 農林部 當局의 承認을 받아 製造工場에서 檢疫
을 畢한 後 輸出港口에서 最終的인 再確認 檢疫를 實施
하고 있습니다.

檢疫申請人은 所定의 檢疫 手數料를 國庫에 納入하
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重要畜產物 輸出入現況은 다음과 같읍니다.

年度別 重要畜產物 輸出入(檢疫) 現況

		單位	1960	1961	1962	1963
輸入	生豚 頭		20,334	67,521	38,991	114,543
	毛皮 株		61,441	209,448	109,731	108,909
	獸毛 kg		191,844	249,281	180,954	247,533
	牛骨 %		3,576.6	1,202.7	1,920.8	2,218.6
輸出	卵類 個		101,204		448,730	2,261,720
	肉類 kg		102	600	43,182.6	395,031.2
	家畜 頭		237	495	1,209	587
	羊皮 kg		—	—	—	3,996
	家禽 首		505	504	1,850	1,100
	卵類 個		2,000	—	28,070	509
	原皮 kg		1,347,927	1,026,010	1,159,414	485,926
	肉類 kg		—	—	—	1,040

3. 海外各國의 檢疫實施 現況

海外各國의 實情에 對하여 앞서 우리나라의 檢疫
實施 現況과 重複되는 點이 많으므로 總括的인 考察은
省略하고 各國別로 具體的으로 實例를 招開하겠습니다.

핀란드·이나라는 南쪽과 西쪽이 바다이며 北東쪽에
커다란 도니온소기江이 흐르고 있어 家畜傳染病 侵入
防止에 極히 有利한 地理的條件을 가진 나라이라고 하
겠습니다.

約 100年前에 輸入牛에 依하여 牛肺疫이 侵入되었었
고 其後 亦是 輸入牛에 依하여 부루셀라病이 侵入되었었
고, 一次大戰中 소련將隊의 犬에서 狂犬病이 軍馬에

서 鼻疽가 發生되었고, 結局 時日이 經過됨에 따라 口蹄疫까지도 侵入되었읍니다.

그後 이나라는 防疫의 効果를 거두어 牛의 부루셀라病과 結核病을 根絕시키게 되었으며 過去 10年間에 鼻疽, 假性結核, 豚코레타, 家禽페스트, 家禽코레타等의 發生이 없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實情으로보아 이나라의 家畜防疫當局은 國內 防疫의 한 手段으로서 外國으로부터의 새로운 傳染의 再侵入을 警防하기 爲하여 輸入檢疫에相當한 關心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推測 됩니다.

이나라의 畜產物 輸出入은 主로 性能이 優良한 乳牛의 輸出이 有希望視되고 있으며 輸入에 있어서는 거의 自給自足 狀態에 있어 다만 少數의 馬類, 種畜用의 若干의 肉用牛種, 肉加工品이나 爰玩動物 程度라 하겠읍니다.

1937年에 처음으로 輸入 檢疫關係法이 制定되어 1955年에 補強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內容을 簡單히 考察하여는 첫째로 定府는 家畜傳染病上必要時에는 動物이나 畜產物의 輸入에 制裁를 加할수 있으며 거의 部分의 動物이나 畜產物은 輸入檢疫의 節次를 거쳐야 輸入될수있게 되어 있읍니다.

둘째는 檢疫對象物은 우리나라와 거의 恒似하여 家畜으로부터 骨, 皮, 羽毛, 蹄角, 血粉, 精液에 이르기 까지이며 우리나라와多少 差異가 있는 點은 肉類에 있어서는 重量 5kg 以下는 檢疫을 實施하고 있지 아니하며, 畜產物로서 製造된 통조림, 크리-우等이 指定檢疫物로 规定되어 있으며, 豚脂, 牛脂等은 該製造工場에서 製造될때에 80°C 以上으로 處理 되었다는 内容의 製造工場側이 發行한 證明書가 있어야 輸入이 許可되고 있읍니다.

鯨油나 其他 動物性 油脂는 檢疫對象에서 除外되고 있읍니다.

犬이나 猫輸入에 있어서는 狂犬病과 디스템파豫防注射를 到着前 3週日 以內에 實施한 證明이 있어야 輸入이 許可되도록 规定되어 있읍니다.

된렌드에는 動物檢疫所가 別途로 設置되어 있지 아니하여 農務省 獸醫局에서 直接 檢疫事務를 管掌하고 繫留檢疫이 必要할때에는 農務省當局의 指示에 依하여 所定의 期間을 其時 其時 適當한 場所에서 實施하고 있읍니다.

佛蘭西•이나라는 動物이나 畜產이 國外로 輸出入할 때에는 勿論 國內에서 州間에 移動할 때에는 法律에 따른 檢疫을 實施하고 있읍니다.

動物 檢疫所는 그位置의 適合性 與否가 重要觀點으로

로 傳染病 傳播防止上 理想的인 隔離收容을 할수있고例컨데 小島等에 設置함을 原則으로 하고있으며 檢疫物의 運送, 飼養管理等에도 恒常 檢疫當局의 指示받게되어 있읍니다.

現在 佛蘭西에는 佛國 西海岸 尖端의 海港인 부레트市에 檢疫所가 設置되어 있으며 200頭의 牛를 一日收容할수있는 規模로서 이地帶는 都心地나 工業地帶는 完全히 隔離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檢疫所는 50頭式 收容할수있는 完全히 隔離된 4㎡區劃으로 區分되어 있습니다.

丁抹•이나라는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畜產國으로서 畜產物을 主로 輸出만하는 나라입니다. 1961年度의 畜畜 및 畜產物의 輸出入 統計를 보며는 다음과 같읍니다.

輸入; 馬 658頭, 牛 90頭, 豚 0頭 細羊 및 山羊 40頭
輸出, 馬 29,891頭 牛 369,943頭(이中 6,298頭는 畜用이고 其他는 屠殺用이었음) 豚 179,450頭
細羊 및 山羊 0頭, 馬肉 11,042頭分 牛肉 925,194頭分 (成牛, 頤牛, 哺乳中인 頤牛等)
豚肉 9,555,250頭分, 細羊 및 山羊肉 33,758頭分, 鷄肉 57,000噸

이나라의 輸出入 動物 및 畜產物에 關한 主要內容의 輸出關係規程은 다음과 같읍니다.

1. 丁抹政府 獸醫室은 輸出用 馬 및 偶蹄類 家畜에 對하여 傳染病 警防上 및 健康을 爲하여 必要한 制裁를 加할수 있으며
2. 政府는 輸出되는 種畜用 牛 및 精液에 對하여 그 健康性을 保證하여 야하며,

3. 種豚 및 그精液의 輸出은 禁止되며 있고

4. 위에 말한 各動物에 對하여 獸醫健康 診斷書를 發行하게 되여 있읍니다.

이에 關하여 좀더 具體적으로 考察하여 보면 위의 第1項에서 말씀드린 檢疫은 原產地나 또는 輸出用 畜畜市場中 一個所에서 政府 獸醫官에 依하여 個體別으로 實施합니다.

其結果 傳染病에 罷患되었거나 或은 傳染病 汚染地帶 特히 口蹄疫等으로 因한 地帶 또는 그 隣接地帶의 것은 輸出 또는 市場出荷가 禁止 됩니다.

污染地帶內의 家畜을 屠殺하고자 할때에는 政府 獸醫官의 檢查를 받으며 그 檢查方法은 부루셀라病, 結核病, 白血病等 各己 그疾病에 따라 適宜한 方法을 쓰고 있읍니다.

輸出專用 家畜市場은 每週一回式 開場되며 이市場은 農務省에 登錄하도록 规定되어 있읍니다.

輸出되는 大部分의 馬, 牛, 豚이 이 市場을 通하고
으며 다만 種畜牛 또는 極小量의 屠殺用 家畜은 原產
에서 直接 輸出港口로 運送되는 例도 있습니다. 輸用
種牛에 限하여는 必히 輸出港口 近方이나 其他
宜한 場所에서 繫留 檢疫을 畢하여야하나 其他 動物

通常에는 繫留하지 않고 있으며 畜牛는 一般屠殺
家畜과 隔離 繫留하고 있습니다.

現在 丁本에는 14個所의 輸出指定 港口가 있는데 그
部分이 海港이며 其他는 鐵道驛이거나 或은 種牛에
하여는 空中 運送을 하는 例가 있습니다. 輸出 專用
畜市場은 54個所이며 1回 開場에 來去되는 家畜數은
日 一個所當 大動物로 平均 400~2,000頭입니다.
輸出專用 家畜市場은 風雨를 躲할 수 있는 지붕이 있
야하며 家畜上下車臺가 設置되어 있어야하며 開場日
清掃 및 消毒을 實施하여야하며 모든 施設은 消毒車
依하여 清掃 및 消毒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作業은 定例의 으로 政府獸醫官 監督下에
施되어야 합니다.

輸入專出用 特別家畜市場은 丁抹와 獨逸 國境線인
드보一斗市에 設置되어 있어 여기에는 224頭의 馬나
等 大動物을 鐵道貨車에 積載 할 수 있는 지붕이 덮인
下車臺가 마련되었고 種牛 100頭를 収容할 수 있는 畜
1棟과 合計 440頭의 成牛를 収容할 수 있는 牛舍 1棟
10頭式을 隔離 収容할 수 있는 隔離 牛舍가 5棟이 있
니다.

家禽類 輸出에 있어서는 1940年 2月 9日字 農林省
示에 依하여 雄鷄, 雌鷄, 食用去勢雄鷄, 初生卒, 七
鳥, 鴨等은 農務省 當局에서 公認받은 養鷄場에
하여 疾病에 患되거나 아니한 健康鷄임을 證明하는
증의 獸醫 檢查證明書를 添附하여 輸出되고 있습니다.

種鷄, 種鷄用 初生卒 및 烏化用 種卵을 輸出할 때
는 輸出者は 반드시 國立 家禽育種委員會의 監督을
고 있는 養鷄場에서 生產되었다는 内容의 原產地 證
마政府 獸醫官이 之 白痢, 家畜ти브스, 其他 살모
-라症, 및 뉴켓슬病에 患되거나 아니하였다는 内容
檢查證을 携帶하여야 합니다.

單蹄類 動物은 原產地 國家의 家畜傳染病 發生狀況
참작하여 惡性傳染病이 發生되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輸入은 禁止되고 있습니다.

單蹄類가 國내에 到着되며는 그即時 血液檢査, 마태
反應을 實施하며 同時に 馬인 境遇에는 其血統 및
ability이 優秀하여야 輸入될 수 있습니다.

馬, 牛, 羊, 豚 其他 偶蹄類의 動物은 單蹄類 動物의 境
나같이 惡性 傳染病이 發生되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輸入은 禁止되어 있습니다.

偶蹄類 動物이 到着되며는 檢疫所에 2~3週間 繫留
되어 慢性傳染病에 對한 檢査를 實施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繫留檢疫 施設은 丁抹內에 3個所가 設置되어 있
습니다.

豚은 輸入이 禁止되고 있습니다. 犬 및 猫의 輸入에
있어서는 스칸디나비아 各國은 特別 協定이 規約되어
있으므로 獸醫健康證明書를 携帶한 境遇에는 6週日間
까지는 無檢疫으로 相互往來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非協定國으로서 狂犬病이 發生되지 아니한
나라로 부터의 輸入時는 輸入港에서 獸醫學的 檢査가
實施된後 輸入 許可되고 狂犬病 發生國家로 부터의 것
은 狂犬病豫防注射를 單한 다음 코펜하겐 所在의 特
設檢疫所에 6週日間 繫留하게 됩니다.

野生兔 家兔 및 그毛皮는 輸入이 禁止되어 있으며,
毛皮用 草食動物, 뉴-트리아 및 켄짜라等은 農務省當
局의 特別許可가 있어야 輸入할 수 있습니다.

家禽輸入에 있어서는 鷄, 鶴, 七面鳥, 孔雀, 鴨, 鳩
等의 雜系의 鳥類는 生體이든 屍體이든 如何한
形態로도 輸入이 禁止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特殊한 種鷄用 初生卒는 檢疫所에서 6個月間
飼育試驗 및 獸醫學的 檢査 結果 그優秀性과 側康性이
證明한 것으로 個人이 아닌 國立 家禽育種 委員會의
公認을 받았을 境遇에 限하여 輸入을 許容하고 있습니다.

오-무屬鳥類 및 如何한 種類의 鳥類도 이의 輸入이
禁歎되어 있습니다.

雄鷄, 雌鷄 中卒, 去勢한 食用雄鷄, 七面鳥, 鴨, 鳩
等의 肉類의 輸出은 農務者이 許可한 屠鷄場에서 屠殺
되어 内臟을 除去하고 不必要한 部分은 切斷하고 또는
통조림化 하거나 其他 輸入國側의 注文內容에 알맞는
形態로 만들것만이 獸醫官 監督下에 輸出되고 있습니다.

馬, 牛, 羊, 豚 및 家禽의 鮮屍體나 或은 그로부터
分離하여 낸 肉類 等은 原皮膜을 除外하고는 全量을 人
體用으로 使用하지 않고 있습니다. 屠鷄場內에서 分離
하여 낸 層肉이나 層物들은 獸醫官 監督下에 農務省이
許可한 化製場에 運搬되어 指肪分을 抽出하는 等의 精
製作業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馬, 牛, 羊 豚의 生肉의 輸入은 스칸디나비아 國以外의
地域으로부터는 輸入이 禁止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惡性 傳染病 發生이 없는 地域으로부터는 特
別許可를 얻어 輸入할 수 있으나 이境遇에는 輸出國
獸醫官의 그生肉의 生體 및 屍體 檢査 證明書를 添加:

하도록 规定되어 있습니다.

生肉이 國내에 到着되며는 新鮮度와 살모네—파菌에 關한 檢查를 實施 합니다.

肉통조림을 輸入하는 境遇에는 世界 어느나라로부터 에서도 輸入은 할수있으나 輸入許可以前에 殺菌度試驗을 實施한 後 그成績에 따라 許可하고 있습니다.

原皮 및 皮類 輸入 檢疫時는 完全히 自然 乾燥되었는가의 與否, 鹽漬되었을 境遇에는 鹽漬後最少限 14日間이 境遇 되었나의 與否 및 그 鹽漬實施 狀況을證明하는 文書의 所持 與否를 檢査 합니다.

脂肪質이 많은 毛類, 牛나 豚의 原毛 精製되지 아니한 牛脂等은 輸入이 禁止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特殊한 目的인 境遇에는 輸入을 許容하고 있습니다.

殘飯, 牛乳, 乾草, 薙, 動物性 肥料 輸入은 禁止되어 있습니다.

肉粉, 骨粉, 魚粉의 輸入은 輸入後 再殺菌하지 아니하여는 輸入이 許容되지 않습니다.

魚粉의 輸入에 關한 許可是 獸醫當局에서 實施하고 있으나 生魚類, 魚肉物 및 密蜂의 輸出入 取扱事務는 獸醫當局 所管에서 除外되고 있습니다.

英國・英國은 檢疫期間을 決定하는데는 該傳染病의 潛伏期 및 臨床의이나 實驗室 檢査에 所用되는 日數를 考慮하여 決定 짓고 있습니다.

1 輸入檢疫 現況

反芻動物 및 豚은 爰蘭, 가나다等 極少數國을 例外한 其他 地域으로부터는 血統의 動物과 展示用 其他 特殊用에 限하여 輸入하도록 1950年에 公布된 動物疾病法에 规定되어 있습니다.

1) 血統의 登錄된 動物의 輸入檢疫에 있어서는 輸出國에서 干先 檢疫을 實施한 다음 英國內에 있는 許可 받은 私設檢疫所에 留됩니다.

그러나 間或 廉價 國立檢疫所가 輸出入 動物을 爲하여 利用하는 境遇도 있다고 합니다.

檢疫所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尊守하여야 합니다.

가) 小必要한 사람의 檢疫所內의 出入을 禁止시키고

나) 檢疫所內에서 勤務하는 사람은 衛生服을 着用할 것이며 出入時마다 衣服 및 신발을 消毒하여야 합니다.

다) 動物의 糞尿는 清毒後에 檢疫所 外部로 搬出함.

라) 檢疫所內에서 離死되었거나 法에 依하여 殺處する 動物은 廢棄하여야 한다.

마) 政府는 殺處分된 動物에 對하여 補償치 않는 다.

바) 荷主는 檢疫 手數料 및 管理費를 支拂하여야 함.

2) 展示用 動物의 輸入檢疫은 輸入後 第一次 檢疫을 都會地의 動物園에서 28日間을 받습니다.

이 境遇에 부루—단그病 等이 發生하는 地域부터 輸入하였을 境遇에는 媒介昆蟲을 完全 驅除하기 爲하여 56日間을 留하여 驅虫을 實施합니다.

이와같이 第一次 檢疫 28~56日間을 實施한 다음 第二次 檢疫을 같은 都會地의 動物檢疫所에서 11個月間 實施한 다음 地方動物園에 開放됩니다.

④ 馬의 輸入 檢疫 規程은 別途로 없으며 아푸리카馬病等의 發生地區로부터 輸入되는 境遇는 該當傳染病에 罹患되어있지 아니하다는 內容의 檢疫證明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⑤ 犬 및 猫의 輸入檢疫

英國에 輸入되는 모—든 犬 및 猫는 6個月間을 檢疫所에서 檢疫을 畢한 다음 開放됩니다.

犬 猫의 檢疫을 爲하여 設置된 檢疫所는 全國에 36個所가 있으며 이는 全部 私設이나 政府獸醫官이 最少一日 一回 以上 訪問하여 徹底한 政府의 監督을 받고 있습니다.

이 檢疫所은 다음과 같이 法에 依한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1) 檢疫所가 都會地에 所在하던 地方의 村落에 存在하는 檢疫所 内부와 外部가 壁에 依하여 完全히 隔離되어야 하며

2) 一頭式 서로 接觸되지 않도록 二重 鐵網으로 隔離收容하고 칸을 지워 齒牙, 足 및 耳朶을 傷하지 않도록 한다.

3) 檢疫中の 犬은 規程에 依하여 一定한 運動을 一頭式 시켜야하며 이때에 他動物과 接觸시켜서는 안 된다.

4) 個體別로 性格에 맞는 犬所를 提供하여야 한다.

5) 消毒을 實施하기 힘들거나 消毒하지 아니한 物品을 留場內에서 使用할 수 없음.

6) 出入門 또는 出入口는 恒時 자물쇠로 감기 두어야함.

7) 政府動物 檢疫官은 檢疫中の 動物에 對한 모—든 監督을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고 있음.

8) 檢疫官, 指定管理人 및 許用받은 訪問客만 檢疫中인 犬貓를 訪問 할 수 있다.

9) 出產, 罹病, 死時는 即時 檢疫官에 報告된다.

10) 檢疫中인 犬이나 猫에 咬傷이나 傷處를 받은 사람은 狂犬病豫防에 必要한 處置를 받는다. 사자 虎等의 特殊動物은 直接 動物園에서 이와같은 檢疫을 받는다.

④ 家禽輸入 檢疫

愛蘭國으로부터의 家禽은 無條件으로 輸入이 許可되고 있으며 瀋州, 뉴지란드, 丁抹, 노루웨이, 瑞典으로부터의 家禽은 12日以上의 檢疫을 輸出國에서 畢하여 輸入이 許可되고 있습니다.

其他 地域으로부터의 輸入은 1963年初까지 禁止되어 있었으나 現在는 適該한 檢疫條件附로 許容하고 있습니다.

檢疫期間의 決定은 여러 事情을 考慮하여야하나 通常 鷄에 對하여는 4~6個月, 오리에 對하여는 2個月 七面鳥는 7~9個月間을 家禽檢疫所에서 檢疫을 받아야 하며 檢疫中の 檢疫手數料, 飼養管理費는 荷主가 負擔하여야 합니다.

家禽專用 檢疫所는 7個所가 있으며 이는 農林省의 許可를 받은 것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規定下에 檢疫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1) 계留하는 種卵이나 家禽의 到着되기前 3個月間 使用된적이 없어야함.

2) 半經 半마일 區域내에 家禽의 飼育이 없는곳

3) 分離된 一個 鷄舍當一件의 檢疫物만을 收容한다.

4) 檢疫 鷄舍로부터 最少 50회一트 떨어진 곳에 壁을 쌓아 隔離施設을 하여야함.

5) 檢疫 區域내의 出入을 制限하고 出入者の 衣服·고무長靴等은 消毒한 것이라야 하며, 出入國에 消毒服 및 長靴를 備置하여 入所時 使用하였다가 出所時는 벗어놓아야 한다.

6) 粪은 檢疫이 終結될 때까지 搬出하지 못하여 搬出時는 消毒을 實施한다.

7) 鷄舍는 家禽이 生長할 수 있도록 커야하며 野生動物 및 害虫의 侵入防止施設이 있어야함. 例를 들면 窓門은 半인치 차리 鐵網으로 막고 모든門은 자물쇠로 채워야 한다.

8) 輸入種卵의 부화실은 檢疫所內에 位置하여 手洗 및 解體検査施設이 있어야함.

9) 燒却施設이 있어야함.

10) 檢疫所는 農林部當局의 完全한 監督을 받으며 檢疫官은 定期的으로 檢疫所를 巡視한다.

2. 輸出檢疫 現況

英國은 西紀1920年에 無自覺한 牛輸入商人에 依하여

輸出된 牛에서 口蹄疫이 發生된 以來 廉敦市 阜頭 및 近郊에 檢疫所를 設置하고 輸出되는 모一隻 牛를 繫留檢疫하고 있으며 그 實施 狀況은 다음과 같읍니다.

가. 15哩 地域內의 牛 및 過去 3個月間 牛疫 및 牛肺疫이 痘生한 例가 없는 地域의 牛만 檢疫所에 繫留한다.

나. 所定의 期間을 繫留檢疫한 後 牛는 遲滯없이 般積 輸出됩니다.

2個所의 檢疫所가 設置되어 있으며 當初의 檢疫所는 戰爭中 爆擊에 依하여 破壞되어 1950年 6月에 新築된것입니다.

各種 檢疫所는 緬羊의 藥浴用水槽 및 牛用藥品撒布臺가 施設되어 있습니다.

다. 檢疫中인 動物은 牛 및 豚은 消毒藥이 撒布되고 緬羊은 藥浴槽에서 藥浴됩니다.

3. 畜產物 檢疫 現況

世界 全域으로부터 輸出되는 山羊毛와 에지우트나스一單에서 或은 이나라를 經由한 毛類는 國內工場에서 재처리된後 輸出됩니다.

其他 모테야, 豚毛, 馬牛毛 等은 輸入者가 리바풀市에 있는 政府毛類 消毒場에 送付하여 炭疽菌에 對한 消毒을 받어야 합니다. 40°C 内外의 温度下에 다음 각 過程에 따라 10分間式 處理하여야 합니다.

- 1) 0.25~0.3% 農度의 소一大水에 浸漬
- 2) 비누풀에 浸漬
- 3) 흐루무아루데 하이드液에 浸漬
- 4) 清水로 水洗

이와같은 過程으로 處理된 毛類는 乾熱空氣中에서 乾燥되어 約 200kg 무게 單位로 包裝합니다.

輸入檢疫 證明書는 消毒 萬드別로 發行됩니다. 英國은 1957年에 公布된 動物 疾病法에 依하여 牛, 緬羊, 豚, 山羊, 家禽은 動物이나 家禽의 폐死體가 混合되여 있는 不潔한 生飼料를 給飼하는 것은 禁止되어 있으며 必히 1時間以上 煮沸된 饉飯반으로 飼育토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象牙海岸·이나라는 1933年에 輸出入動物 檢疫法이 制定되어 現在 施行中에 있습니다.

檢疫所를 別途로 施設한것은 없고 其時 其時 農林省當局 指示에 依하여 必要한 檢疫措置를 實施하고 있습니다.

카나다·이나라에 輸出되는 모一隻 家畜 및 畜產物은 動物傳染病法에 依하여 健康與否를 確認한 後에 輸入이 許容되고 있습니다. 牛의 輸入에 있어서는 美國을 除外한 其他地域으로부터는 原產地國家에서 過去 18個月

間 口蹄疫이나 牛疫이 발생된 事實이 없다고 카나다政府가 認定한 나라에 한하여 그때 그때 許可를 得한後 輸入되고 있읍니다. 이와같이 美國을 除外한 其他地域으로부터 輸入되는 牛는 카나다政府의 要請에 依하여 原產地國家에서 一定한 期間의豫備檢疫을 畢한 다음 카나다에 到着되면 再次 30日間을 動物檢疫所에 繫留하여 結核, 부루세라病, 假性結核等의 檢查를 받으면서 檢疫을 畢하여야 합니다.

美國, 뉴-지랜드 및 濟洲以外의 國家로부터 商品으로서 輸入되는 乾草, 薑, 其他 傳染病媒介의 憂慮가 있는 生土壤等은 輸出國政府가 發行한 消毒證明書를 携帶하여야 하며 이證明書의 發行節次 및 內容은 事前에 카나다政府에 依하여 承認을 받은것이라야 합니다. 現在 카나다政府는 口蹄疫 및 牛疫의 發生이 없다고 認定하고 있는나라는 美國, 濟洲, 뉴-지랜드, 爱蘭, 노루웨이, 아이스란드 및 카나다입니다. 또한 카나다에 輸入되는 모-든家畜은 必히 船舶에 依하여 運送되어야 하며 더우기 船海中에는 他國을 經由하지 말고 直船하여야 합니다.

이나라에 輸入되는 犬에 封하여는 3個月間 檢疫所에서 繫留檢疫을 實施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英國, 北部愛蘭, 濟洲, 뉴-지랜드, 베-뮤다, 자마이카, 和蘭, 바하마, 아이스란드, 丁抹, 노루웨이, 瑞典, 오-스트리아 等地로부터 輸入되는 境遇에는 狂犬病豫防注射實施證明書와 健康診斷書를 携帶하였을 때에는 繫留檢疫은 省略하고 있읍니다. 한便이나타의 輸出檢疫を 要領中特殊한 것을 拔取하여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읍니다. 輸出되는 모-든動物은 生產地에서 獸醫官의 檢查를 畢한後 移動되어 船積直前에 港口에서 再次 獸醫官의 檢查를 畢하지 아니하면 輸出이 許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輸出코자하는動物은 法에 依하여 船積前 12時間以前에 船積港에 到着되어 야하며 거기서 充分한 休憩를 取하는 同時 檢疫獸醫官에 依하여 最終的인 再檢疫를 畢한後 船積輸出됩니다. 또한 모-든檢査는 正確을 期하기 為하여 曲間에 한하여 實施하도록 法으로서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放線菌症에 罷患된 動物 또는 튜렐크린 反應成績이 陽性인 動物 또는 부루세라 血清反應成績이 陽性인 動物이라 할 지라도 輸入國側의 權威있는 當局의 要請이 있을 境遇에는 카나다政府의 特別許可를 받아 輸出이 許容되고 있읍니다.

또한 이나라는 牛에 對하여 부루세라 痘統制를 為하여 부루세라 아보-루투스 19型의 蠶牛豫防注射를 實施하고 있는데 對象蠶牛의 年齡範圍를 美國은 生後 4箇月齡부터 8箇月齡까지를 對象으로하고 있는데 比하여 이나라는 生後 4箇月齡부터 11箇月齡까지의 蠶牛에 實施하고 있는 點도 重要한 參考事項이 될 것으로 믿읍니다.

4 結 尾

以上 우리나라와 外國의 檢疫實施 現況을 말씀드렸으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하여야 할 일 또는 家畜이나 豚產物을 輸出入하는 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가. 우리나라는 豚產振興上에 决定의in 支障을 招來하는 口蹄疫, 牛肺疫, 牛疫의 侵入을 豫防하는데 斷乎한 措置를 繼續 取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事情이 許諾하는 한 國內에서 發生되고 있는 家畜傳染病에 對한 發生抑制方法과 根絕에 對한 総合的이며 年次의in 長期 防疫計劃을樹立하여야 하며

다. 家畜이나 豚產物을 輸出하는 業者は 우리나라의 衛生水準이나 風習을 基準으로 삼지 말고 購入國側의 水準을 念頭에 두고 事業을 推進하여야 할것이며

타. 結核症, 부루세라病 等에 罷患된 家畜도 輸入國이 要求만하면 輸出하고 있듯이 어느 나라나 輸出檢疫은 輸入國보다 훨씬簡易하게 實施함이 慣例임으로 家畜을 輸入코자 할 때에는 農林部나 外務部 通商局을 通過하여 事前에 充分한 家畜傳染病에 對한 調査가 끝난後 輸入手續에着手토록 할것이며

마. 動物을 取扱할 때에는 人道의이며 文化人다운 動物愛護精神으로 對하여 우리나라 國民의 文化水準을 國내 및 國外에 周知시키도록 努力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關하여는 海外의 몇몇 나라는 家畜의 人道的屠殺이 法律化되어 施行되고 있으며 動物虐待(학대)防止運動이 活潑히 展開되고 있는 點은 特히 意義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5. 輸出動物에 生毒豫防 注射藥을 接種하는데 關하여 國際間에 物議가 漸高되고 있으므로 이에 關한 漸進의in 對備策을 講究하여 구라과 地域等의 對外輸出에 支障을 招來하지 아니하도록 豫備의in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것이다. <筆者=農林部家畜衛生課勤務>